

2007. 11. 16.

條例案件審查報告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産業建設委員會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11. 06	2007. 11. 07	2007. 11. 12	2007. 11. 12	정상교 의원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	"	심사 보류	친환경 농산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중 입주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상수도 급수설비, 보안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하여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로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병행하여 충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경농업 육성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에 보안등, 상수도시설(단,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에 한함)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 제1항)

나.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보조)사업을 실시(안 제9조 내지 안제10조)
- 연1회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래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관리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공동주택은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 이외의 엘리베

이터, 난방기계시설, 수도급수시설, 하수시설 등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으로 관리주체를 두게 되었고

공공용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됨

-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절차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법적 절차인 집행부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결정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수도 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로 한정하여 건물내 개별 상수도시설과는 차별을 두고 있음
이런 시설물은 건물 외부의 급수관, 저수조, 메인계량기임
- 또 보안등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가로·보안등이 단지내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의 범위로 보아도 무방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보안등과의 형평차원에서도 합당함

나.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생산과정이 힘든 만큼 수요자가 많이 찾게 되는 친환경 농산물이지만 생산·유통과정에서 부정 친환경농산물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3조에서 시장과 농업인을 친환경농업 추진주체로서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계획수립·변경, 시책, 기술적인 문제 등을 심의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
-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한 해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부분은 물론 시비의 부담으로 별도의 친환경농업 지원정책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공동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고,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지?
- 답변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되어 왔음

- ▶ 질의 : 소방시설은 왜 제외하는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 보호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함
- 답변 : 소방시설은 건물내에 위치하는 설비로써 공동주택에 소방설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상가와 단독주택간의 형평에 문제가 있게 됨

나.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 질의 : 조례제목에 '지원'자를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 '지원'이란 글자를 넣지 않아도 조례의 내용은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질의 : 농산물이력추적제(GAP)는 충주에 몇농가 인지?
GAP농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망
- 답변 : 농관원,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알 수 없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 심사보류

< 조례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함 >